

범죄 피해자 영향 진술서 및 원상회복 요구 진술서: 작성 안내

범죄 피해자 영향 진술서란?

범죄 피해자 영향 진술서(Victim Impact Statement)는 범죄가 피해자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를 기록하는 문서입니다. 범죄 피해자 영향 진술서에는 해당 범죄의 내용 또는 그 범죄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 정보는 경찰에 제출하는 증인 진술서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범죄 피해자 영향 진술서는 피고인의 유죄가 인정되거나 피고인이 유죄 답변을 하면 선고할 때 사용됩니다.

범죄는 신체적 또는 정서적 피해, 재산 피해,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당한 손해의 정도는 판사가 적절한 형량을 결정할 목적으로 범죄의 경중을 평가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는 요인입니다.

범죄 피해자 영향 진술서는 반드시 형법에 규정된 양식(양식 34.2)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 양식은 법무부(Ministry of Justice) [웹사이트\(www.ag.gov.bc.ca/prosecution-service/info-sheets/victim_impact_statements.htm\)](http://www.ag.gov.bc.ca/prosecution-service/info-sheets/victim_impact_statements.htm)에서 구할 수 있으며 여러 언어로 된 번역본도 있습니다.

범죄 피해자 진술서는 누가 작성할 수 있나요?

범죄로 신체적 또는 정서적 피해, 재산 피해, 경제적 손실을 당한 사람은 범죄 피해자 영향 진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범죄 피해자 영향 진술서를 작성할 수 없으면 대개 가족 구성원 같은 다른 사람이 대신 작성하여도 됩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진술서를 작성할 수 없는 이유를 반드시 설명하여야 하고 대리 작성자의 이름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범죄 피해자 영향 진술서는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나요?

아닙니다. 범죄 피해자 영향 진술서 작성은 피해자의 선택입니다.

범죄 피해자 영향 진술서의 내용이 검사(Crown Counsel)와 판사에게 매우 중요한 이유는 해당 범죄가 피해자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 온전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범죄 피해자 영향 진술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범죄 피해자 영향 진술서는 피해자 자신의 말로 기록되어야 합니다. 해당 범죄가 자신과 가족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기술하십시오. 피고인에 관한 언급이나 범죄 사실 묘사(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법원에서 승인하지 않은 특정 선고가 내려져야 한다는 피해자의 생각을 기재하면 안 됩니다.

범죄 피해자 영향 진술서에는 해당 범죄가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을 표현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피해자가 그런 그림이나 지은 시 또는 작성한 편지를 포함하여도 됩니다.

검사는 범죄 피해자 영향 진술서를 검토하여 부적절한 언급이 포함되지 않도록 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자신 및/또는 가족이나 친구의 안위가 우려되고 피고인과 전혀 접촉하고 싶지 않으면 그런 의사를 범죄 피해자 영향 진술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피고인과 관련하여 안전에 당장 문제가 있고/있거나 피고인이 접촉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피해자를 접촉하려고 한다면 이를 경찰에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범죄 피해자 영향 진술서 및 원상회복 요구 진술서: 작성 안내

범죄 피해자 영향 진술서는 전체를 작성하거나 일부를 작성하여도 됩니다. 자신에게 해당하지 않거나 답변하고 싶지 않은 질문에는 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면이 더 필요하다면 종이를 추가하여도 됩니다.

범죄 피해자 영향 진술서를 수정할 수 있나요?

예, 가능합니다. 또 다른 범죄 피해자 영향 진술서를 작성하여 해당 범죄가 자신에게 미친 영향에 관한 기타 정보를 추가하여 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내용도 피고인과 피고인 측 변호사에게 공개됩니다.

범죄 피해자 영향 진술서 작성을 다른 사람이 도와줄 수 있나요?

예. 범죄가 피해자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 피해자가 기술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면 피해자 서비스 담당자나 친구, 가족이 작성을 도울 수 있습니다.

진술서를 다음 공판일 전까지 검사에게 전달하지 못할 것 같아 우려되면 지역 관할 검사 사무소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관할 검사 사무소는 1-800-663-7867로 서비스 BC(Service BC)에 연락하거나 BC 주 정부 안내 웹사이트 <http://dir.gov.bc.ca/>에서 검색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 손실에 관한 내용도 기재할 수 있나요?

예, 해당 범죄가 재정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손실에 관한 정보는 두 가지 용도로 쓰입니다. 다수의 범죄에서 경제적 손실액은 범죄의 심각성을 반영하며, 피고인이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 판사가 적절한 형량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경제적 손실에 관한 정보는 판사가 사건의 정황과 종류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실을 배상하라는 명령을 내릴 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 사건 판사는 민사 소송 판사보다 그런 명령을 내리는 데 제약이 더 많지만, 다음과 같은 손실을 다루는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거나 보호 관찰 명령 또는 조건부 선고 명령의 조건으로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 손실, 손상 또는 파괴된 재산의 가치 및 수리 또는 교체 비용
- 일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재정적 손실(예: 상실 수입)
-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의료비, 상담료, 치료비
-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비용 또는 손실(보험의 본인 부담금 포함)
- 피해자와 피고인이 한집에 살았고 해당 범죄로 피해자가 그 집을 떠나게 된 경우 이사로 인한 비용(임시 주거비, 식비, 보육비, 교통비 등)
- 사기나 절도로 손해를 본 금액

원상회복 요구 진술서란?

원상회복 요구 진술서(Statement on Restitution)(양식 34.1)는 피해자가 원상회복 요구 여부를 표시하고 손실과 피해를 명시할 목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는 양식입니다. 판사는 선고의 일부로 원상회복 명령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을 받는 범죄인은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피해자는 배상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민사 법원에 이 명령을 제출하여 강제 집행되게 할 수 있습니다. 범죄 피해자 영향 진술서에 기재한 내용은 원상회복 명령 신청이 아닙니다. 원상회복 명령을 신청하려면 별도의 원상회복 요구 진술서(양식 34.1)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 양식은 법무부(Ministry of Justice) [웹사이트\(www.ag.gov.bc.ca/prosecution-service/info-sheets/victim_impact_statements.htm\)](http://www.ag.gov.bc.ca/prosecution-service/info-sheets/victim_impact_statements.htm)에서 구할 수 있으며 여러 언어로 된 번역본도 있습니다.

범죄 피해자 영향 진술서 및 원상회복 요구 진술서: 작성 안내

재정적 영향을 범죄 피해자 영향 진술서에 기술하고 원상회복 요구 진술서로 배상을 신청하면 배상을 받게 되나요?

범죄가 재정에 미친 영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실이나 피해를 배상하라는 명령이 보호 관찰 명령이나 조건부 선고 명령의 조건으로 또는 원상회복 명령의 조건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런 명령은 자동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손실 또는 피해 금액은 반드시 법원이 쉽게 확인할(쉽게 산정할) 수 있어야 하며, 피해자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청구서, 영수증, 견적서 등 필요한 모든 서류를 법원에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중 어느 서류에든 피해자의 주소나 신용 카드 번호와 같이 타인에게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개인 정보가 있으면 그 서류를 첨부하기 전에 해당 정보를 삭제하여야 합니다. 피고인이 명령대로 배상하지 않으면, 명령의 종류에 따라 피해자나 보호 관찰관이 법원에 추가 조치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판사가 피고인에게 배상 명령을 내리든 안 내리든 피해자가 민사 소송으로 배상을 구하거나 범죄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Crime Victim Assistance Program)에 보상을 신청할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민사 소송 개시 및 원상회복 명령 집행에 관한 정보는 법원 등기소(Court Registry)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도 됩니다. 법무부에 무료 전화 1-844-660-4898로 연락하거나 Restitution@gov.bc.ca로 이메일을 보내도 됩니다.

특정 범죄의 결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상해를 당한 피해자는 상해에서 유발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범죄 피해자 지원법(Crime Victim Assistance Act)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서비스 담당자는 범죄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수혜 자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는 피해자가 범죄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에 1-866-660-3888로 연락하여도 됩니다.

범죄 피해자 영향 진술서는 어떻게 사용되나요?

피해자가 작성한 범죄 피해자 영향 진술서는 선고 시 판사에게 제공되거나 범죄가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을 검사가 판사에게 알려주려고 피해자가 제공하는 정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피해자는 양형 심리에 참석할 수 있으며, 이 심리에서 자신의 범죄 피해자 영향 진술서를 직접 제시하게 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요청하려면 피해자 서비스 담당자나 검사에게 가능한 한 빨리 알리고 진술서를 자신이 직접 읽을 것인지 아니면 검사가 대신 읽어주기를 원하는지 알려주십시오.

범죄 피해자 영향 진술서를 본인이 직접 낭독하고자 하면 힘이 되어 주는 사람이 참석한 상태에서 읽게 해달라고 하거나 범죄인 면전을 피하여 법정 밖에서 폐쇄 회로 TV로 또는 가림막 뒤에서 읽게 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어느 방식으로든 진술서를 낭독하려면 가능한 한 선고일 한참 전에 검사에게 미리 알려 방법을 상의하여야 합니다. 양형 심리 참석 시 도움이 되는 여행 보조금 등 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지원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서비스 담당자와 상의하십시오.

범죄 피해자 영향 진술서를 법정에서 제시할 때 피해자 본인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고 판사의 의견상 공판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해당 범죄가 발생하기 전에 촬영한 본인의 사진을 가지고 가도 됩니다. 범죄 피해자 영향 진술서를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제시하는 경우(예: 사망 사건인 경우), 역시 판사의 의견상 공판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해당 범죄가 발생하기 전에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을 그 사람이 가지고 가도 됩니다.

검사는 피해자 진술서 사본을 피고인 측 변호사나 피고인에게 반드시 제공하여야 합니다.

피고인 측 변호사나 피고인은 공판 전 범죄 피해자 영향 진술서를 볼 수도 있으며, 피해자는 진술서의 내용에 대하여 반대 신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범죄 피해자 영향 진술서 및 원상회복 요구 진술서: 작성 안내

피해자 진술서가 법원에 제출되면 나중에 연방 가석방 담당관이나 주 정부 보호 관찰관 또는 캐나다 가석방 위원회(Parole Board of Canada)가 범죄인의 석방 조건 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사용하기도 합니다.

범죄 피해자 영향 진술서는 언제 어디로 제출하여야 하나요?

범죄 피해자 영향 진술서 및/또는 원상회복 요구 진술서 작성을 마치면 서명을 하고 표지를 첨부하여 날짜를 기재한 후 모든 페이지를 지역 관할 검사 사무소로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거나 직접 제출하십시오. 범죄 피해자 영향 진술서를 피고인이 선고를 받기 전에 검사에게 가능하면 빨리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서비스

이용 가능한 피해자 서비스에 관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링크 BC(VictimLink BC)

무료 전화: 1-800-563-0808

TTY 전화: 604-875-0885

수신자 부담 전화: 711 텔러스 릴레이 서비스(TELUS Relay Service)

문자: 604-836-6381

이메일: VictimLinkBC@bc211.ca

www.victimlinkbc.ca